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합5104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2,324,331원 및 그중 299,658,5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39,521,805원 및 그중 136,856,068원에 대하여, 각 2021. 1. 29.부터 2021. 3. 1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20. 8. 28. 체결한 대물반환예약 및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20. 4.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8. 접수 제389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다. 피고 E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9. 접수 제170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9.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3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9. 22.부터 2018. 9. 21.까지, 종속채무 법령 및 원고와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채권자 중소기업은행(도당중앙지점),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약정에서 ‘신보’는 원고, ‘본인’은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은 피고 C, B을 가리킨다).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도당중앙지점)에 보증금액 135,000,000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18. 9. 21.,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2)를 발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25.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8. 9. 21., 여신이자율 '시장금리 + 2.4279%'로 정한 중소기업자금대출(갑 제1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20. 9. 18.까지 연장되어 이 사건 대출의 여신만료일도 함께 연장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2020. 7.경부터 시작된 지방세 체납과 2020. 9. 19.자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2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36,856,068원(= 원금 135,000,000원 + 이자 1,856,068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8%로 변동이 없다.

4)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2,079,877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은 585,860원[보증금액 135,000,000원 ×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 12/1000 ×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9. 19.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1. 1. 28.까지 132일/365일), 원 이하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21,805원(= 대위변제금 136,856,068원 + 채권보전비용 2,079,877원 + 위약금 585,8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36,856,06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1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항쟁에 관한 판단

회사의 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4707 판결 참조).

피고 C는, 피고 C가 경영하던 피고 회사를 피고 B와 F에게 포괄양도하였고,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C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 주장과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이승연, 판사 김동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건물 1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J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1층 4458.16㎡

1층 4415.19㎡

2층 4403.19㎡

3층 4389.39㎡

4층 4375.89㎡

5층 4362.39㎡

6층 4348.89㎡

7층 4335.39㎡

8층 4320.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K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서구 G 공장용지 5600.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5600.3분의 29.5799

(이상 B 소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표시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8월 28일
접수 제389446호 갑구 순위번호 제4번
가등기권자 D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4월 9일
접수 제170671호 채권최고액 금25,000,000원
근저당권자 E.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회사가 소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아 래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1차보증	2017. 9. 22.	135,000,000	2018. 9. 21. (2020. 9. 18.)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2017. 9. 25.	150,000,000	B, C
2차보증	2020. 5. 21.	85,000,000	2025. 5. 20.	일반운전 자금대출	L은행	2020. 5. 21.	100,000,000	B
3차보증	2020. 5. 21.	76,000,000	2025. 5. 20.	일반운전 자금대출	L은행	2020. 5. 21.	80,000,000	B

2. 주채무의 내용

소외 각 금융기관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일자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변제기한을 각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였다가 변경보증기한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20. 7.경부터 시작된 지방세 체납과 2020. 9. 19. 연체정보가 등록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보증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각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2021. 1. 29., 소외 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1차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136,856,068원(1차보증 원금 135,000,000원 + 이자 1,856,068원)을, 소외 L은행에 대하여 2차 내지 3차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162,802,526원[(2차보증 원금 85,000,000원 + 이자 942,955원) + (3차보증 원금 76,000,000원 + 이자 859,571원)]을, 각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보증건의 보증료율에 연1000분의 5의 비율을 더한 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1차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0. 9. 19.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1. 1. 28.까지 132일간의 미이행금 135,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율에 의한 위약금을 산정하면 금 585,860원($135,000,000 \times 12/1000 \times 132/365$, 원이하 버림)입니다.

다. 채권보전비용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 C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회사, B, C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금 2,079,8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 C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2021. 1. 29.부터 연 8%입니다.

4. 손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 C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하였고 이러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M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및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갑 제1

호증의 1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참조), 피고 회사, B, C는 2020. 7.경 지방소득세 체납 및 2020. 9. 19.부터 시작된 연체 정보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2020. 10. 16. 위 보증 원금연체로 인하여 최종 부실처리되었는 바, 그 무렵 피고 회사, B, C는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위 제1항 기재의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 B, C는 2020. 7.경 지방세 체납 및 2020. 9. 19. 연체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곧 원금연체로 인해 최종 부실처리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되어 2020. 10. 16. 최종 부실처리 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비교적 명백합니다.

나. 사해행위

(1) 이에 원고는 위 각 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지방세 체납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 8. 28. 및 2020. 4. 9.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 D, E의 각 명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물반환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물반환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2) 피고 B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곧 지방세 체납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위 보증 원금연체로 인해 최종 부실처리되어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위와 같은 각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3) 피고 B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피고 B의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이로인해 경영난에

붕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지방세 채납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원금 연체로 인해 최종 부실처리되리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수익자인 피고 D, E는 피고 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이러한 피고 B와 피고 D, E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상호 통보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 B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각 처분행위를 한 것이거나 가사 실제 피고 D, E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편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D, E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5. 결 론

(1)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위 1차보증 대위변제금 136,856,068원, 2차보증 내지 3차 보증 대위변제금 162,802,526, 1차보증 위약금 585,860원, 채권보전비용 금 2,079,877원의 합계 금 302,324,331원 및 그 중 위 각 보증 대위변제금 합계 금 299,658,5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위 1차보증 대위변제금 136,856,068원, 1차보증 위약금 585,860원, 채권보전비용 금 2,079,877원의 합계 금 139,521,805원 및 그 중 1차보증 대위변제금 136,856,06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2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2) 피고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6. 관할합의

원고와 피고 회사, B,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신용보증약정서 제15조 참조). 끝.

